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나5943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나59432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14 선고 2020가단1220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C조합

변론종결 2021. 10. 8.

판결선고 2021. 11. 26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14. 선고 2020가단12206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. 3. 22. 접수 제11246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11247호로 경료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 제3쪽 9~10번째 줄의 ‘(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5811호)이’를 ‘(서울남부지방법원 J)이’로 고치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‘2. 추가판단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별도 부동산에 대한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계속 중에 한 위법한 행위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가압류에 기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위 가압류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이상 위 가압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어서 민법 제175조에 따라 위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므로 보건대, 민법 제175조의 ‘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’라 함은 가압류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것인바,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가압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연정, 판사 허준서, 판사 강희석

별지